삼정 KPMG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September 4 2023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가격

캐나다 - 디지털세 개정안 발표

캐나다 재무부는 디지털 서비스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新 digital service tax (이하 "디지털 서비스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재무부는 2023년 9월 8일까지 금번 발표된 세법 개 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도입배경

금번 발표된 디지털서비스세 개정안은 2020년 처음 발표된 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최근 OECD 가입국이 2025년까지 디지털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OECD의 국제적인 Pillar 1 협약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셜미디어, 온라인 광고 및 사용자 정보 등 관련 매출에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번 디지털서비스세의 대상기업은 직전 회계연도 그룹 연결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 회계연도에 캐나다 내 "대상" 매출액이 2천만 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번 디지털서비스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및 2023년 캐나다내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매출액 산정에 대한 간소화된 방식 선정

금번 개정안에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첫해(2024년) 2022년 및 2023년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 대상 매출액 산정 시 간소화된 산정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간소화된 산정방식을 선정하는 경우 캐나다 내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대상 매출액은 근사치를 계산하는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매출액의 명확화

금번 개정안 및 관련 주석서에는 디지털서비스세의 대상 매출액을 식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매출액 네 가지 유형 중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 가지 대상 매출액 유형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매출: 일반적으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매출은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와 잠재적인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로써,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매출 전부를 캐나다 원천으로 간주합니다.
 - 캐나다에서 물리적으로 수행되고 수취함
 - 캐나다에 위치한 부동산과 관련됨, 또는
 - 일반적으로 상품이 캐나다에 위치하거나 서비스가 수행되는 시점에 상품이 캐나다에 위 치한 경우

기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매출은 사업 또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캐나다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광고 서비스 매출: 개정안에 의하면 특정 온라인 광고 서비스 매출은 디지털서비스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광고 서비스 매출은 온라인 광고 게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발생됩니다. 캐나다에 위치한 사용자에게 광고가 표시되어 직접 추적이 가능한 매출(해당 사용자를 통해 직접 귀속되는 매출)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전적으로 귀속되지만, 그 외의 매출은 광고가 표시된 사용자 중 캐나다에 위치한 사용자의 비율에 따라 캐나다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 · 소셜미디어 서비스 매출: 개정안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 매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 서비스 매출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속(또는 사용)과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포함됩니다. 개정안 주석서는 대상매출 산정을 위해 사용자가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간주

되는 시점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 매출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위치한 플랫폼 사용자의 비율에 따라 캐나다에 귀속됩니다.

· 사용자 정보 매출: 개정안에서는 대상 매출액의 네 번째 유형인 사용자 데이터 매출의 산정 방법은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용자 데이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셜미디어 플랫폼 또는 온라인 검색엔진의 사용자로부터 수집한데이터를 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허여함으로써 발생합니다.

■ 기타 변경 안

개정안은 디지털서비스세와 관련된 새로운 정의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 수탁자 및 수취인과 관련된 새로운 조항
- · 파트너십과 관련된 새로운 방안
- · 추가적인 조세 회피 방지 방안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대법원 2023.6.1. 선고 2021 두 30679 판결

제목: 상표권 사용료 미수령에는 경제적 합리성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국패)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원고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 상표 (이하 "쟁점 1상표") 및 BB 상표 (이하 "쟁점 2상표"라 하고, 쟁점 1상표과 합하여 "쟁점상표들"이라 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음
- 쟁점 상표1은 원고의 계열회사인 AA주식회사 (이하 "한국AA"), 쟁점 상표2는 원고의 계열회사인 DD, EE, FF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면세법인"이라 하고, 한국AA와 이 사건 면세법인을 합하여 "이 사용자 법인"이라 함)가 각각 사용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상표 사용료를 미수취 하였음
-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들에 대해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용자 법인의 순매출액에 일정한 상표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음 (이하 "당초 처분")

- 이후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상표 사용료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쟁점 1상표에 대해서는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하고, 쟁점 2상표에 대해서는 사용료율을 낮추어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하는 판단을 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음

2) 쟁점

- 상표 사용료 미수령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단

- (1) 쟁점 1상표
-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의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보면서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음.
- 이에 ①한국AA가 쟁점 1상표를 영업에 사용하면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하여 온 반면, 원고는 쟁점 1상표을 등록 이후 이를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② 쟁점 1상표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한국AA에 의하여 형성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표 사용료 미수취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 (2) 쟁점 2상표

- 원고는 이 사건 면세법인과 체결한 경영관리계약(원고가 이 사건 면세법인에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용역과 자산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면세법인이 쟁점 2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급받은 <u>경영관리수수료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u>는 점을 들어, 별도로 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3) 시가산정의 적법여부 (가정적 판단)
- 원고가 쟁점상표들을 미수취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정한 사용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03

관세

관세법 및 FTA 특례법 주요 개정사항

1) 개요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음.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투자·고용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 극복,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에 초점을 맞췄음. 주요 관세법 및 FTA 특례법 개정사항으로는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등이 있음.

2) 주요 개정사항

(1)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관세법)

: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 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

현행	대상기간	개정안
20%	보정기간 경과 후 6 개월	30%
10%	6 개월~1 년	20%
	1 년~1 년 6 개월	10%

(2)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법)

- :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
-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물품

(3)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법)

- :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하는 수수료* 폐지
- * 기본수수료(소요시간×2 천원) + 실비상당액

(4)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FTA 특례법)

- :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중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등*" 추가
- *① 원산지증빙서류에 수입자 귀책 없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보정 신청한 경우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에서 기간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등

3) 시사점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및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등을 통해 수입자들의 세금/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우회 덤핑 차단 및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증진 및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려 함.

Key Contacts

삼정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u>윤용</u>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